

고시 2026-169호

## 사도개설허가 고시

사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도개설 허가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04월 23일

파 주 시 장

설 치 목 적	제2종근생(제실) 진·출입로 이용		
구 간	○ 시점 : 법원읍 삼방리 443-2번지 ○ 종점 : 법원읍 삼방리 443-2번지		
공사 시행 장소	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443-2번지		
착 수 예 정 일	2026년 3월	준 공 예 정 일	2027년 10월
사 도 개 설 허 가 규 모	○도 로 폭 : 5m ○도로연장 : 81m ○면 적 : 493m <sup>2</sup>		
공 사 시 행 자	여흥민씨 호참공파 둔방동 종중		